

# 14강 지구촌 윤리

## ♣ 통일 비용

### ① 분단 비용

-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 유형 비용(군사, 외교)과 무형 비용(전쟁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 소모적 비용이기 때문에 민족 경쟁력의 약화 초래

### ② 평화 비용

- 통일 이전에 평화 정착 및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
- 북한 자원 및 교류 협력 사업,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등 남북 경제 협력
-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분단 비용을 줄여줌
- 경제적 실익은 물론 사회, 문화적 실익을 증진함
-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통일 비용 완화
- 분단 및 통일 비용을 감소시켜 평화 통일의 기반 제공

### ③ 통일 비용

- 체제 통합 비용 ~ 통일 후 남북 격차 해소 및 이질적 요소 통합
- 통일에 따른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 ♣ 해외 원조

## ※ 개념 정리 ※

### ① 벤담

우선 싱어와 롤스 설명에 앞서 벤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담과 같은 고전적 공리주의자는 '공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합니다. 원조도 당연히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이 때 '더 좋은 결과'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

미하며, 그래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의 여부가 도덕적인 행위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리주의 원칙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여유로운 사람들이 빈곤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자들을 돕는다면 그들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경우에 그들이 입는 손실은 별로 크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 ①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대체로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보편적인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배타적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와 복지권,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롤스와 같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국내의 부조를 의무로 인정하기에 둘의 입장을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 # Nozick

노직은 개인에게 배타적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며,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소득 재분배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 보호, 계약의 집행과 같은 최소 국가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도움이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노직은 천부적 재능에 대해서도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재능이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보아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 # Rawls

반면, 롤스는 노직과 달리 공적 부조와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인정합니다.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고통받는 사회'는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물질적 자원 등이 결여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그들이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조의 의무는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 즉 '입헌적 자유주의 사회'에 가까운 적정 수준의 사회를 만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롤스가 해외 원조의 의무를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에 국한하는 이유는 기근 문제가 주로 물질적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기에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 요구되는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부를 평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며 해외 원조의 목적이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롤즈는 해외 원조문제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우연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무지의 베일을 국제적인 정의에서는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있으며, 해외 원조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만 강조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롤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으로서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롤즈는 각 국제법을 제정할 때 각 국가의 특수한 능력이나 여건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각 국가를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국제적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여 국제법을 만든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즉 국제적 정의 원칙을 채택함에 있어 우연성이나 편파성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롤즈는 여기서 ‘정치적인’ 원칙만을 언급하고 있지, ‘경제적’인 원칙을 언급하고는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정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의 조건들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면 정의의 원칙과 관련된 정치적 원칙들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칙과 관련된 경제적 원칙에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채택되었다면 지구적 차원에서 최소 수혜자, 즉 약소국가에 대한 적극적 경제 지원이 요구될 수도 있겠으나 롤즈는 정치적 원칙을 넘어선 다른 원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차후의 과제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롤즈는 ‘적극적인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권리론’의 관점에서 복지권을 인정합니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은 국제 원조에서 적용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관련하여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 #Singer

그러나 싱어는 이러한 롤즈의 사상이 ‘국제적 차원의 모델’이지, ‘지구적 차원의 모델’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세계화되어가는 시대에는, 롤즈의 모델을 뛰어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사고와 윤리가 요구되는데, 롤즈는 여전히 국민 국가의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즈는 국가들 사이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지구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싱어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원조를 주장합니다. 공리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주장을 펼쳤다면 국내의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차이를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싱어의 입장은 사실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리주의 관점에서 본인의 윤리 이론을 전개합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할 때, '최대다수'에는 쾌고감수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인간이 포함됩니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계산의 기준이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인간 존재를 계산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을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떤 민족, 국가, 인종인지와 무관하게 그 사람의 심각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멀리 떨어진 사람들보다 친숙한 주변 사람들의 기아 상태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제한된 양의 원조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원조를 해주는 것이 공리주의에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원조를 해 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공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이 입장이 교과서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은 사회나 국가의 경계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원조의 수준에서도 인류 전체의 행복이나 이익 증진이 라는 관점에서 해외 원조의 양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싱어는 UN이 권장한 국민총소득의 0.7% 원조보다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풍요로운 선진국에서 평균 이상의 수입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수입의 10% 이상을 해외 원조에 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비중을 줄인다면 고통이 크게 심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리주의적 입장이 해외 원조의 수준을 대폭 증가시킬 것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구상에서 부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세계 평등주의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의 평등한 분배를 통해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할 수 있다면 공리주의는 평등주의적 성향을 띠 수 있겠지만 평등주의적 분배가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부가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인 복지 수준이 저하된다면 공리주의는 일정한 수준에서 여기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의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면 공리주의는 평등주의적 분배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의 불평등한 분배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윤리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특히나 싱어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을 철저히 밀고 나가 인종이나 성별만 아니라 소속 국가에도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전체의 이익 최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싱어는 누구의 고통이 더 큰지를 우선 고려하여 물질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싱어는 윤리란 이성적인 논변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에 따라 우리의 이웃에게 먼저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기출 선지 ※

① 싱어

- 공리주의 :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임
-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함 → 친소와 관계없이 사람을 돕는 것에는 도덕적 차이가 없음
- 굶주림과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임
- 롤스와 달리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 : 지구적 차원에서의 원조 강조

“자기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의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에 자신의 소득 중에서 최소한 1%는 기부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 의무를 공정하게 나눠 가지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부액’이지, ‘최적의 기부액’은 아니다.”

☞ 물론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커다란 희생을 하며 어려운 처지에 다른 사람을 돕자고는 보지 않았음. 다만 커다란 희생 없이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

“도움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인류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지역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 빈곤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류의 복지를 위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세계 시민주의적 차원에서 모든 빈곤한 사람에 대한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주장함
- 모든 사람의 이익 관심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기에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역을 가리지 말고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래서 빈국의 가난함이 부국에서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무관하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였음.

- 원조의 의무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있음. 그래서 원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자국민이나 다른 나라 사람을 가리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야 함.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보편적 기준과 의무를 해외 원조에 대해 부과함
- 인간 개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해외 원조를 강조함
- 싱어는 우리에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힘이 있다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그들을 도울 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음.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역 구분 없이 동등하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의 논리적 근거를 가짐
- 전 인류의 삶을 균등하게 하려는 것은 아님
- 원조는 전 인류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함.

## ② 롤스

- 원조의 목적 :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함
- 국제주의적 관점 : 해외 원조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원조의 목적을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두지 않음
- 정의론의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정의에 작동시키지 않음
-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질서 정연한 사회의 형성(자유 민주주의적 제도 정착 사회)으로 보았음
- 원조의 우선적 대상은 "고통받는 국가"이며, 이 "국가"에 대한 원조는 "도덕적 의무"임
-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만민)가 자유로운, 혹은 적정 수준의 "체제"를 확립할 때, 평화와 정의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적인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에 질서 정연한 만민들이 합의하고 정치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면 국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차원에서의 재화 분배에 적용하지 않음(베이트는 적용함)
-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적 정의를 논함. 그러므로, 롤스는 국제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가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실시하고, 무법적 국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설

득을 하는 것임

- 다시 말해서, 국제주의 관점에서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지,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봄
  - 고통받는 국가에 대한 원조에는 한계를 두어야 함(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여건에서 벗어나는 선에서 그쳐야 함)
  - 해외 원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제공되는 것임
  - 원조의 직접적인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 빈곤은 물질적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아 원조의 대상과 목적을 "정치적인 분야"에 한정 짓고 있음
  - 해외 원조에 대해 어려운 개인들에 대한 구호가 아닌 질서 정연한 사회 형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롤스의 입장임. 빈곤이나 인권 유린과 같은 문제들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 문화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하는 방법은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싱어가 인류 전체의 최소한의 복지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롤스는 각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에 관심을 가졌다. 롤스는 어떤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개인들의 복지와 상관없이 원조는 중단된다고 보았다.
- P.S. 이와는 달리, 찰스 베이츠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적 차원의 분배 정의를 의무로 보아 강조하였음. 그는 "부존자원"과 관련하여 지리적 이점이 그로부터 나온 이익을 독점할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보아 무지의 베일을 쓰고 모든 나라가 자국의 자원 상태를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계약 당사자들은 자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므로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줄 경우에만 분배의 불평등이 허용된다고 보았음
- 가난한 국가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해외 원조가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음.
  - 재화와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위임한다는 롤스에게 틀린 선지.
  - 사회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이런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나 목표를 넘어서면 원조가 중단될 수 있음. 즉,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목표의 의무가 아님.
  - 국가별 상황 따라 원조의 규모는 바뀔 수 있음
  - 빈곤과 인권 유린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
  - 국가 발전의 변수는 부존자원이 아닌(개인적 구호가 아닌) 정치와 문화임.

-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지는 않음. 국가 간 경계를 인정하는 국제주의이며,
  - 원조의 주체는 국가나 사회라고 보았으나 개인의 원조도 인정은 함
  -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하지 않음
  -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X. 물론 보장은 함. 선천적 재능으로 인한 사회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 롤스의 정의 분배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 노력에 따른 업적 + 재분배
  - 무지의 베일은, 전통적 사회 계약론 상태에서 자연상태에 해당함(베일이라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름)
- 즉, 실재 상태가 아니며, 문화적 원시 상태도 아니나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장치.

- 원조를 통해 국가들 분의 수준을 조정하는 건 롤스, 싱어 전부 안 됨
- “그 나라 국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 = 롤스 ”
- 국가의 원조를 기대하면서 개인이 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국가가 해외 원조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건 틀린 선지이다.
- 해외 원조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원조 결과와 상관없지 않다!
- 사회 구조 개선이 아니라 빈민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노직

- 롤스, 싱어와 달리 해외 원조를 의무가 아닌 자선의 관점에서 바라봄
- 개인은 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윤리적 의무를 지지는 않음
-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개인에게 있음
- 개인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우리에게 타인을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므로 우리는 자발적 동의 없이 타인을 도울 필요가 없다.

### ♣ 전쟁에 관한 다양한 입장

#### ① 현실주의

- 국제 사회를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무정부의 상태로 봄
- 분쟁의 원인 :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 외교 정책

- 분쟁 해결 방법 :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 방지, 힘에 의한 평화
- 국가 간의 관계에는 도덕적 관계가 없으며,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임
-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국제 관계가 이익 추구의 필연성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 국제 사회에는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 권위체가 존재할 수 없다.
- 군사력의 증강과 동맹을 통한 국제 분쟁의 억지를 강조한다.
- 주권국가를 단일한 이익(=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유일한 행위자로 봄)
- 제도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음. 하지만 제도는 강대국에 의해 창출되었을 때 존재함. 국제법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가짐. (강대국이 싫어하면 국제법 효력이 약해짐)
-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국가 간 권력 투쟁이라는 국제 정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② 이상주의

- 국제 사회의 갈등은 잘못된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임
- 분쟁의 원인 : 인간의 선한 본성으로 이성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함 → 분쟁은 잘못된 제도로 인한 것임
- 분쟁 해결 방법 :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 규범을 통한 제도의 개선으로 전쟁 방지, 집단 안보 형성
- 무력은 어떤 형태이든 정당화될 수 없음
- 모든 형태의 전쟁과 무력의 사용 금지
-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국가 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국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 세계 시민법은 인류의 평화적인 교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 연맹의 확산을 통해 국제 사회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 국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통해 평화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본다.
- 국제 사회에서 이상적 규범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강조한다.

## ③ 정의전쟁론

“전쟁은 신법(神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

서는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공격의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길 거부할 경우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적개심이 아닌 공공선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교전 중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는 행위는 신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 전쟁에 대한 도덕적 제한 조치 수용
- 무력이 정의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
- 무고한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적국의 침입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전쟁 허용
-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한 다음에 수행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 허용

#### ♣ 영구 평화론

-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국내적으로 내정 간섭을 받지 않는 공화제를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보편적 우호 관계에 따라 국제법을 적용하는 국제적 연맹 창설 구상.
- 국제 분쟁이 “상호 간의 무지와 오해”로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이므로 “제도적 개선, 대화, 타협”을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음 ~ “국제기구”가 반드시 창설되어야 함
- 즉,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어렵지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음
- 정치 또한 이성과 선택이 어우러지는 도덕적 영역임

㉔ 영구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는 서로 “주권”을 보장하고 타국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음.

☞ 단일 주권의 연방 국가는 전제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할 수 있음

㉕ 국내적으로는 시민의 정책 결정이 가능한 “공화제(민주적)”가 도입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우호 관계에 입각한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적 연맹을 창설해야 한다고 보았음.

☞ “원초적 제약”의 이념에서 도출 가능하고 모든 법률상 입법이 근거되는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임. 이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와 공동된 입법예의 의존의 원리,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확립됨.

☞ “국제법”은 실천 이성의 명령으로 “도덕 법칙”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함. (자연법으로서는 국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 개인들의 경우처럼 국민 역시 자연 상태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국제 연맹”의 형태로 요구되어야 함. 이는 결코 “국제 국가”일 수 없음. 왜냐하면 상위자와 하위자의 관계에서 ‘국제 국가’라는 개념이 제시되면 서로 간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구성원들은 단순히 국민이라는 지위만으로 정체화되기 때문임.

☞ 국제법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오히려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이들에게 평화란 무덤 속에서나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와 같음.”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은 “국제 국가”가 아니라, “세계 공화국, 세계 정부”도 아니라, “국제 연맹”이라고 보았음.

다만 이러한 국제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시민 의식을 개혁해야 하고, 시민들이 우리는 전 인류의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입장을 가져야 함. 즉 세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법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음.

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함 (방문권)

- 모든 사회 구성원은 지구의 땅을 공동 소유함으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 이에 반하는 행위는 자연법에 위배되고 평화로운 관계는 공법에 의해 확립된다.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보다 다가갈 수 있다.
- 질서정연한 사회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를 추구한다. (아닐 수도 있지만..)

㉕ 예비 조항

-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보한다면 그 어떤 평화조약도 진정한 의미 평화조약 X
- 독립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즉 식민지배는 결코 허락되지 않으며, 국가는 “사유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도덕적 인격체로서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다.
- 국가 간 대외적 분쟁에 대해 “어떤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장의 요구에는 안전한 채무일지 모르나 위협스럽게 사용될 것이다.
- 어떤 국가도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간섭할 수는 없다. 그렇게 행동할 어떤 권리도,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만한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암살, 항복 조약 파기 등이 그 예시다. 이는 비록 전시라고 할지라도 적국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신뢰조차 저버리는 행위이고, 이후 관계 회복과 평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 상비군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영구평화론 선지

- 단일한 세계 국가가 이상적이지만 불가능.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 공화정, 법치를 통한 국제연맹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
- 모든 국가의 정치 형태는 “권력이 분산된 공화정” 이때의 공화정은 단순히 지배 형식이 아니라 통치의 형식. 입법부로부터 행정권이 분리된 체제를 말하는 것. 입법과 행정을 결정하는 전제정의 경우, 지배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화정체에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화정 체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음
- 세계 단일 공화국, 세계 국가가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별국의 연합만 긍정(세계 연합)
- 개별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방제 주장
-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함
- 각국의 정체성은 남겨 두고, 서로의 사이를 좋게 하는 데에만 세계 시민법이 필요함
- 국제 사회 구성원인 개별국가들은 서열이 없는 동등한 주권 국가들
- 전 세계를 통치하는 공화정제의 단일 국가의 수립이 평화 달성을 위한 이상적 방법임

♠ 갈통의 폭력과 평화

“폭력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욕구, 복지에 대한 욕구, 정체성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는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이 있다. 직접적인 폭력이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폭력이며, 구조적 폭력이란 사회 구조나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폭력으로 익명인 경우가 많다. 문화적 폭력이란 종교나 사상, 언어처럼 상징적인 것으로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폭력이다.”

☞ 갈통은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말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폭력을 직

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한다. 그런 다음,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올리히 벡의 글로벌 위험 사회

- 위험사회 특징 : 위험의 평등화 = 환경오염과 같은 위험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므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다시 말해 모두에게 평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 위험의 전지구화 : 북극의 빙하가 녹고, 육지가 물에 잠기며, 러시아 일본의 원전 사고는 광범위한 피해를 주었다. 이는 개별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
  - 인류 공통 위기 : 테러, 오염하여 온 인류를 평등하게 위협함
-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 시민주의를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음.

♣ 통일 비용

① 분단 비용

-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 유형 비용(군사, 외교)과 무형 비용(전쟁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 소모적 비용이기 때문에 민족 경쟁력의 약화 초래

② 평화 비용

- 통일 이전에 평화 정착 및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
- 북한 자원 및 교류 협력 사업,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등 남북 경제 협력
-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분단 비용을 줄여줌
- 경제적 실익은 물론 사회, 문화적 실익을 증진함
-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통일 비용 완화
- 분단 및 통일 비용을 감소시켜 평화 통일의 기반 제공

③ 통일 비용

- 체제 통합 비용 ~ 통일 후 남북 격차 해소 및 이질적 요소 통합

- 통일에 따른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 해외 원조

## ※ 개념 정리 ※

### ① 벤담

우선 싱어와 롤스 설명에 앞서 벤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담과 같은 고전적 공리주의자는 '공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합니다. 원조도 당연히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이때 '더 좋은 결과'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의 여부가 도덕적인 행위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리주의 원칙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여유로운 사람들이 빈곤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자들을 돕는다면 그들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경우에 그들이 입는 손실은 별로 크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 ①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대체로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보편적인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배타적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와 복지권,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롤스와 같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국내의 부조를 의무로 인정하기에 둘의 입장을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 # Nozick

노직은 개인에게 배타적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며,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소득 재분배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 보호, 계약의 집행과 같은 최소 국가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도움이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노직은 천부적 재능에 대해서도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재능이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 이익

이 된다고 보아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 #Rawls

반면, 롤스는 노직과 달리 공적 부조와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인정합니다.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고통받는 사회'는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물질적 자원 등이 결여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그들이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조의 의무는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 즉 '입헌적 자유주의 사회'에 가까운 적정 수준의 사회를 만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롤스가 해외 원조의 의무를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에 국한하는 이유는 기근 문제가 주로 물질적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기에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 요구되는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부를 평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며 해외 원조의 목적이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롤스는 해외 원조문제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우연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무지의 베일을 국제적인 정의에서는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있으며, 해외 원조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만 강조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롤스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으로서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롤스는 각 국제법을 제정할 때 각 국가의 특수한 능력이나 여건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각 국가를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국제적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여 국제법을 만든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즉 국제적 정의 원칙을 채택함에 있어 우연성이나 편파성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롤스는 여기서 '정치적인' 원칙만을 언급하고 있지, '경제적'인 원칙을 언급하고는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정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의 조건들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면 정의의 원칙과 관련된 정치적 원칙들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칙과 관련된 경제적 원칙에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채택되었다면 지구적 차원에서 최소 수혜자, 즉 약소국가에 대한 적극적 경제 지원이 요구될 수도 있겠으나 롤스는 정치적 원칙을 넘어선 다른 원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차후의 과제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롤스는 '적극적인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권리론'의 관점에서 복지권을 인정합니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국제 원조에서 적용하지 않지만, 기본적

인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관련하여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 #Singer

그러나 싱어는 이러한 롤스의 사상이 '국제적 차원의 모델'이지, '지구적 차원의 모델'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세계화되어가는 시대에는, 롤스의 모델을 뛰어넘는 전지구적 차원의 사고와 윤리가 요구되는데, 롤스는 여전히 국민 국가의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국가들 사이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지구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싱어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원조를 주장합니다. 공리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주장을 펼쳤다면 국내의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차이를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싱어의 입장은 사실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리주의 관점에서 본인의 윤리 이론을 전개합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할 때, '최대다수'에는 쾌고감수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인간이 포함됩니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계산의 기준이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인간 존재를 계산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을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떤 민족, 국가, 인종인지와 무관하게 그 사람의 심각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멀리 떨어진 사람들보다 친숙한 주변 사람들의 기아 상태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제한된 양의 원조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원조를 해주는 것이 공리주의에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원조를 해 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공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이 입장이 교과서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은 사회나 국가의 경계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원조의 수준에서도 인류 전체의 행복이나 이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해외 원조의 양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싱어는 UN이 권장한 국민총소득의 0.7% 원조보다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풍요로운 선진국에서 평균 이상의 수입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수입의 10% 이상을 해외 원조에 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비중을 줄인다면 고통이 크게 심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리주의적 입장이 해외 원조의 수준을 대폭 증가시킬 것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구상에서 부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세계 평등주의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의 평등한 분배를 통해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할 수 있다면 공리주의는 평등주의적 성향을 띠 수 있겠지만 평등주의적 분배가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부가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인 복지 수준이 저하된다면 공리주의는 일정한 수준에서 여기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의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면 공리주의는 평등주의적 분배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의 불평등한 분배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윤리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특히나 싱어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을 철저하게 밀고 나가 인종이나 성뿐 아니라 소속 국가에도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전체의 이익 최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싱어는 누구의 고통이 더 큰지를 우선 고려하여 물질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싱어는 윤리란 이성적인 논변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에 따라 우리의 이웃에게 먼저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기출 선지 ※

① 싱어

- 공리주의 :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임
-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함 → 친소와 관계없이 사람을 돕는 것에는 도덕적 차이가 없음
- 굶주림과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임
- 롤스와 달리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 : 지구적 차원에서의 원조 강조

“자기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의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에 자신의 소득 중에서 최소한 1%는 기부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 의무를 공정하게 나눠 가지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부액'이지, '최적의 기부액'은 아니다."

☞ 물론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커다란 희생을 하며 어려운 처지에 다른 사람을 돕자고는 보지 않았음. 다만 커다란 희생 없이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

“도움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인류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지역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 빈곤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류의 복지를 위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세계 시민주의적 차원에서 모든 빈곤한 사람에 대한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주장함
- 모든 사람의 이익 관심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기에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역을 가리지 말고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래서 빈국의 가난함이 부국에서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무관하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였음.
- 원조의 의무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있음. 그래서 원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자국민이나 다른 나라 사람을 가리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야 함.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보편적 기준과 의무를 해외 원조에 대해 부과함
- 인간 개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해외 원조를 강조함
- 싱어는 우리에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힘이 있다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그들을 도울 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음.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역 구분 없이 동등하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의 논리적 근거를 가짐
- 전 인류의 삶을 균등하게 하려는 것은 아님
- 원조는 전 인류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함.

## ② 롤스

- 원조의 목적 :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함
- 국제주의적 관점 : 해외 원조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원조의 목적을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두지 않음
- 정의론의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정의에 작동시키지 않음
-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질서 정연한 사회의 형성(자유 민주주의적 제도 정착 사

회)으로 보았음

- 원조의 우선적 대상은 “고통받는 국가”이며, 이 “국가”에 대한 원조는 “도덕적 의무”임
-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만민)가 자유로운, 혹은 적정 수준의 “체제”를 확립할 때, 평화와 정의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적인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에 질서 정연한 만민들이 합의하고 정치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면 국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차원에서의 재화 분배에 적용하지 않음(베이츠는 적용함)
-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적 정의를 논함. 그러므로, 롤스는 국제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가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실시하고, 무법적 국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임
- 다시 말해서, 국제주의 관점에서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지,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봄
- 고통받는 국가에 대한 원조에는 한계를 두어야 함(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여건에서 벗어나는 선에서 그쳐야 함)
- 해외 원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제공되는 것임
- 원조의 직접적인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 빈곤은 물질적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아 원조의 대상과 목적을 “정치적인 분야”에 한정 짓고 있음
- 해외 원조에 대해 어려운 개인들에 대한 구호가 아닌 질서 정연한 사회 형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롤스의 입장임. 빈곤이나 인권 유린과 같은 문제들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 문화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하는 방법은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싱어가 인류 전체의 최소한의 복지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롤스는 각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에 관심을 가졌다. 롤스는 어떤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개인들의 복지와 상관없이 원조는 중단된다고 보았다.

P.S. 이와는 달리, 찰스 베이츠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적 차원의 분배 정의를 의무로 보아 강조하였음. 그는 “부존자원”과 관련하여 지리적 이점이 그로부

터 나온 이익을 독점할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보아 무지의 베일을 쓰고 모든 나라가 자국의 자원 상태를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계약 당사자들은 자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므로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줄 경우에만 분배의 불평등이 허용된다고 보았음

- 가난한 국가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해외 원조가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음.

- 재화와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위임한다는 롤스에게 틀린 선지.

- 사회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이런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나 목표를 넘어서면 원조가 중단될 수 있음. 즉,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목표의 의무가 아님.

- 국가별 상황 따라 원조의 규모는 바뀔 수 있음

- 빈곤과 인권 유린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

- 국가 발전의 변수는 부존자원이 아닌(개인적 구호가 아닌) 정치와 문화임.

-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지는 않음. 국가 간 경계를 인정하는 국제주의이며,

- 원조의 주체는 국가나 사회라고 보았으나 개인의 원조도 인정은 함

-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하지 않음

-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X. 물론 보장은 함. 선천적 재능으로 인한 사회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 롤스의 정의 분배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 노력에 따른 업적 + 재분배

- 무지의 베일은, 전통적 사회 계약론 상태에서 자연상태에 해당함(베일이라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름)

즉, 실재 상태가 아니며, 문화적 원시 상태도 아니나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장치.

- 원조를 통해 국가들 분의 수준을 조정하는 건 롤스, 싱어 전부 안 됨

- “그 나라 국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 = 롤스 ”

- 국가의 원조를 기대하면서 개인이 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국가가 해외 원조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건 틀린 선지이다.

- 해외 원조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원조 결과와 상관없지 않다!

- 사회 구조 개선이 아니라 빈민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노직

- 롤스, 싱어와 달리 해외 원조를 의무가 아닌 자선의 관점에서 바라봄
- 개인은 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윤리적 의무를 지지는 않음
-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개인에게 있음
- 개인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므로 우리에게서는 타인을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므로 우리는 자발적 동의 없이 타인을 도울 필요가 없다.

#### ♣ 전쟁에 관한 다양한 입장

##### ① 현실주의

- 국제 사회를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무정부의 상태로 봄
- 분쟁의 원인 :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외교 정책
- 분쟁 해결 방법 :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 방지, 힘에 의한 평화
- 국가 간의 관계에는 도덕적 관계가 없으며,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임
-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국제 관계가 이익 추구의 필연성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 국제 사회에는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 권위체가 존재할 수 없다.
- 군사력의 증강과 동맹을 통한 국제 분쟁의 억지를 강조한다.
- 주권국가를 단일한 이익(=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유일한 행위자로 봄)
- 제도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음. 하지만 제도는 강대국에 의해 창출되었을 때 존재함. 국제법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가짐. (강대국이 싫어하면 국제법 효력이 약해짐)
-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국가 간 권력 투쟁이라는 국제 정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② 이상주의

- 국제 사회의 갈등은 잘못된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임
- 분쟁의 원인 : 인간의 선한 본성으로 이성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함 → 분쟁은 잘못된 제도로 인한 것임
- 분쟁 해결 방법 :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 규범을 통한 제도의 개선으로 전쟁 방지, 집단 안보 형성
- 무력은 어떤 형태이든 정당화될 수 없음

- 모든 형태의 전쟁과 무력의 사용 금지
-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국가 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국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 세계 시민법은 인류의 평화적인 교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 연맹의 확산을 통해 국제 사회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 국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통해 평화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본다.
- 국제 사회에서 이상적 규범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강조한다.

### ③ 정의전쟁론

“전쟁은 신법(神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공격의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길 거부할 경우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적개심이 아닌 공공선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교전 중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는 행위는 신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 전쟁에 대한 도덕적 제한 조치 수용
- 무력이 정의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
- 무고한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적국의 침입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전쟁 허용
-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한 다음에 수행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 허용

### ♣ 영구 평화론

-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국내적으로 내정 간섭을 받지 않는 공화제를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보편적 우호 관계에 따라 국제법을 적용하는 국제적 연맹 창설 구상.
- 국제 분쟁이 “상호 간의 무지와 오해”로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이므로 “제도적 개선, 대화, 타협”을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음 ~ “국제기구”가 반드시 창설되어야 함

- 즉,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어렵지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음

- 정치 또한 이성과 선택이 어우러지는 도덕적 영역임

㉔ 영구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는 서로 “주권”을 보장하고 타국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음.

☞ 단일 주권의 연방 국가는 전제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할 수 있음

㉕ 국내적으로는 시민의 정책 결정이 가능한 “공화제(민주적)”가 도입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우호 관계에 입각한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적 연맹을 창설해야 한다고 보았음.

☞ “원초적 제약”의 이념에서 도출 가능하고 모든 법률상 입법이 근거되는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임. 이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와 공동된 입법에의 의존의 원리,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확립됨.

☞ “국제법”은 실천 이성의 명령으로 “도덕 법칙”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함. (자연법으로서는 국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 개인들의 경우처럼 국민 역시 자연 상태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국제 연맹”의 형태로 요구되어야 함. 이는 결코 “국제 국가”일 수 없음. 왜냐하면 상위자와 하위자의 관계에서 ‘국제 국가’라는 개념이 제시되면 서로 간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구성원들은 단순히 국민이라는 지위만으로 정체화되기 때문임.

☞ 국제법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오히려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이들에게 평화란 무덤 속에서나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와 같음.”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은 “국제 국가”가 아니라, “세계 공화국, 세계 정부”도 아니라, “국제 연맹”이라고 보았음.

다만 이러한 국제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시민 의식을 개혁해야 하고, 시민들이 우리는 전 인류의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입장을 가져야 함. 즉 세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법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음.

㉖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함 (방문권)

- 모든 사회 구성원은 지구의 땅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인해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 이에 반하는 행위는 자연법에 위배되고 평화로운 관계는 공법에 의해 확립된다.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보다 다가갈 수 있다.

- 질서정연한 사회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를 추구한다. (아닐 수도 있지만..)

㉔ 예비 조항

-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보한다면 그 어떤 평화조약도 진정한 의미 평화조약 X

- 독립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즉 식민지배는 결코 허락되지 않으며, 국가는 “사유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도덕적 인격체로서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다.

- 국가 간 대외적 분쟁에 대해 “어떤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장의 요구에는 안전한 채무일지 모르나 위험스럽게 사용될 것이다.

- 어떤 국가도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간섭할 수는 없다. 그렇게 행동할 어떤 권리도,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만한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암살, 항복 조약 파기 등이 그 예이다. 이는 비록 전시라고 할지라도 적국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신뢰조차 저버리는 행위이고, 이후 관계 회복과 평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 상비군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영구평화론 선지

-단일한 세계 국가가 이상적이지만 불가능.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 공화정, 법치를 통한 국제연맹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

-모든 국가의 정치 형태는 “권력이 분산된 공화정” 이때의 공화정은 단순히 지배 형식이 아니라 통치의 형식. 입법부로부터 행정권이 분리된 체제를 말하는 것. 입법과 행정을 결정하는 전제정의 경우, 지배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화정체에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화정 체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음

-세계 단일 공화국, 세계 국가가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별국의 연합만 긍정(세계 연합)

-개별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방제 주장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함

-각국의 정체성은 남겨 두고, 서로의 사이를 좋게 하는 데에만 세계 시민법이 필요함

-국제 사회 구성원인 개별국가들은 서열이 없는 동등한 주권 국가들



-전 세계를 통치하는 공화정제의 단일 국가의 수립이 평화 달성을 위한 이상적 방법임

♣ 갈통의 폭력과 평화

“폭력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욕구, 복지에 대한 욕구, 정체성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는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이 있다. 직접적인 폭력이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폭력이며, 구조적 폭력이란 사회 구조나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폭력으로 익명인 경우가 많다. 문화적 폭력이란 종교나 사상, 언어처럼 상징적인 것으로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폭력이다.”

☞ 갈통은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말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폭력을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한다. 그런 다음,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올리히 벡의 글로벌 위험 사회

- 위험사회 특징 : 위험의 평등화 = 환경오염과 같은 위험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므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다시 말해 모두에게 평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 위험의 전지구화 : 북극의 빙하가 녹고, 육지가 물에 잠기며, 러시아 일본의 원전 사고는 광범위한 피해를 주었다. 이는 개별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
  - 인류 공통 위기 : 테러, 오염하여 온 인류를 평등하게 위협함
-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 시민주의를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음.